[이의신청 가능문제 36번 모두정답] [감정평가사 허광철]

지문 ②에서 “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”은 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옳은 지문으로 출제하였다. 그러나, **법률 제35조(조합설립인가 등) 제5항 단서 조항 및 령 제31조(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)** 에 따르면 “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”은 조합설립인가내용의 **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·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.** 따라서, **‘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’이 언제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지문**이 된다.

령 제42조(총회의 의결)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2.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
4. 정비사업비의 변경
제35조(조합설립인가 등)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·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·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.**

령 제31조(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)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착오·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
2.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(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
3.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
4.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(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)
5.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
6. 정비사업비의 변경
7.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
8.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. 다만,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9. 그 밖에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